

(사)캐릭터디자이너협회

캐릭터창작등록증 발급 절차·규정 및 혜택 안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캐릭터디자이너협회(이하 "협회")가 운영하는 **캐릭터창작전문가 자격검정위원회**를 기반으로, 캐릭터 창작물의 **선(先)창작 증빙·공적 등록·산업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하여 「캐릭터창작 등록증」의 발급 절차, 기준, 비용 및 혜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도 성격)

캐릭터창작등록증은 다음의 성격을 갖는다.

1. **창작 사실에 대한 협회 공적 등록·증빙 제도**
2. 법적 저작권 등록을 대체하지 않되, **창작 시점 및 독창성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
3. 캐릭터 산업 진입을 위한 **표준 창작 등록 단계**

제2장 용어의 정의

제3조(정의)

- ① "캐릭터"란 시각적 이미지, 설정, 성격, 세계관 등을 포함하여 콘텐츠·상품·라이선싱으로 활용 가능한 창작물을 말한다.
- ② "캐릭터창작등록증"이란 창작한 캐릭터의 명칭, 설명, 창작 연월일, 창작 방식, 턴어라운드 이미지 등 세부 창작 정보와 창작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해당 캐릭터가 창작자의 소유임을 확인·증명해 주는 등록증**을 말한다.
- ③ "신청자"란 캐릭터 창작물을 등록하고 등록증 발급을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장 신청 자격 및 등록 대상

제4조(신청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1. 캐릭터를 직접 창작한 개인(프리랜서, 학생 포함)

2. 캐릭터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
3. 협회가 인정하는 캐릭터 관련 종사자

제5조(등록 대상 창작물)

1. 신규 순수 창작 캐릭터 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창작한 캐릭터
2. 기존 캐릭터의 리뉴얼·확장 버전
3. 상업화 또는 라이선싱을 목표로 하는 캐릭터

제4장 발급 절차

제6조(발급 절차 개요)

캐릭터창작등록증 발급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단계. 캐릭터 창작 등록 신청서 제출

- 신청자 신상내역
- 캐릭터 기본 정보, 설정 설명, 시각자료 업로드

2단계. 등록비 결제

- 등록비: **20,000원(부가세 포함)**
- 결제(계좌이체)

3단계. 등록 승인 및 고유번호 부여

- 시스템 등록 완료 시 자동 승인
- 캐릭터 고유 등록번호 생성

4단계. 캐릭터창작등록증 발급

- 전자 등록증(PDF) 3일 이내 발급
- 요청 시 실물 등록증 발급 가능(별도 비용)

제5장 등록증 내용 및 효력

제7조(등록증 기재사항)

캐릭터창작등록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등록번호
2. 창작자명(개인/법인)
3. 창작일자
4. 등록일자
5. 캐릭터 명칭
6. 캐릭터 창작물
7. 발급기관명 및 직인

제8조(유효기간)

1. 캐릭터 창작물의 증명은 **등록일로부터 창작자 사후 70년**으로 한다.
2.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 신청 가능(간소 절차 적용).

제6장 등록증 발급 비용

제9조(등록비)

1. 캐릭터창작등록증 발급 비용은 **1건당 20,000원**으로 한다.
2. 등록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캐릭터유사검증
 - 고유 등록번호 발급
 - 전자 등록증 발급
3. 결제 완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는다.

제7장 부여 혜택

제10조(공적 인증 및 활용 혜택)

1. 협회 명의를 **공식 창작 등록 증빙** 확보
2. 창작 시점·창작자 명시를 통한 **분쟁 예방 자료**로 활용 가능
3. 투자·제안·공모사업·라이선싱 협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제11조(사업·산업 연계 혜택)

1. 협회 주관 캐릭터 행사·전시·박람회 참가 시 우대
2. 라이선싱·상품화·콘텐츠 제작 연계 기회 제공
3. 협회 추천 캐릭터 풀(Pool) 등재

제12조(홍보 및 네트워크)

1. 협회 공식 채널을 통한 캐릭터 소개 기회
2. 기업·플랫폼·지자체 연계 프로젝트 참여 우선 검토
3. 캐릭터 데이터 기반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단계적 확대)

제8장 제한 및 취소

제13조(등록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허위 정보로 등록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캐릭터로 판단되는 경우

제9장 부칙

제14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운영규정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